

『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시가 발행하고, 구미시 소재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,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(안 제2조)
 - 구미사랑 상품권, 판매대행점, 가맹점 등 용어 정의
-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지역, 판매대행점의 협약(안 제4조~제6조)
- 가맹점의 등록 등(안 제8조~제11조)
 - 가맹점 등록, 상품권 환전, 가맹점의 준수사항, 가맹점 등록의 취소
- 사용자 준수사항(안 제12조)
-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(안 제13조)
- 상품권 활성화 지원(안 제14조)
- 포상 및 유통질서 확립, 환수조치(안 제15조~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, 「중소기업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은
 -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영업자 매출증진 및 생산·고용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구미사랑상품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
 - 소상공인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나,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, 향후 시행규칙 제정 및 협약서 작성 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등 최적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